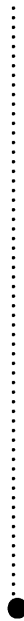



의정활동보고서



제290회 임시회(2017. 2. 6 ~ 2. 17)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들어 제290회 첫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명을 알리는 붉은 닭의 해 2017년에는 우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경상북도가
거침없이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탄핵
정국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사적인 신도청
시대를 활짝 열었고, 상주~영덕고속도로 개통, 차세대

인재육성 등 미래 천년 경북의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제10대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도정현안 특위 가동, 정책연구 활동, 산하기관장 인사검증협약 등 도민의 요구와 바람들을 하나하나 녹여내는 데 디딤돌 역할을 다 했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민생조례를 제정하는 등 알찬수확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국제적으로 세계열강의 패권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국내적으로는 대선정국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도전과 응전의 어려운 선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AI 확산 차단, 미래 참인재 양성 등 당면한 많은 과제들을 집행

부는 물론 각계각층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기존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게 환골탈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책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잘 살펴보시고, 미래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여 세운 2017년도 계획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도민에게 힘이 되고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의 진취적인 기상으로 경상북도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하면서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6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 응 규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0
III. 의안처리	16
IV. 민원처리	17
V. 본회의 보고사항	19
VI. 5분 자유발언	22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22
□ 김종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26
□ 황이주 의원(농수산위원회)	30

부 록

□ 조 례 안(9건)	37
--------------------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90회 임시회는 2017년 2월 6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월 17일까지 12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11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4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2월 6일(월) 14시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를 마친 후, 5분 자유발언과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금)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세운 2017년도 새해 업무보고가 있었다. 제대로 된 정책방향과 미래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다진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291회 임시회로 2017년 3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7년 2월 6일(월) 14:00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7년 2월 6일 ~ 2월 17일(12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60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 결	기타
금 회	15	1	3	2	1	2	1	1	-	4
누 계	319	26	40	41	35	31	33	33	50	30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6(월) 14:21 (제1차)	☐ 5분 자유발언 ○ 남진복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안전처리 ○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2. 17(금) 11:05 (제2차)	☐ 5분 자유발언 ○ 김종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황이주 의원(농수산위원회) ☐ 안전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6(월) 15:20 (제1차)	☐ 안전처리 ○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7(화) 11:00 (제1차)	☐ 안전처리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소관)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8(수) 11:00 (제2차)	☐ 안전처리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6(목) 16:10 (제3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7(화) 11:00 (제1차)	☐ 안전처리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복지건강국 소관)	
2. 8(수) 11:00 (제2차)	☐ 안전처리 ○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자치행정국, 경북도립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7(화) 11:00 (제1차)	☐ 안전처리 ○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7(화) 11:10 (제1차)	☐ 안전처리 ○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해양수산정책관, 농업기술원, 농축산유통국 소관)	
2. 8(수) 11:10 (제2차)	☐ 안전처리 ○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동해안발전본부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7(화) 11:10 (제1차)	☐ 안전처리 ○ 업무보고의 건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도청신도시본부, 소방본부 소관) ○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7(화) 14:00 (제1차)	☐ 안전처리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보고의 건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6(월) 10:20 (제1차)	☐ 안전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6(월) 16:10 (제1차)	☐ 안전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 (동해안발전본부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 소관)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6(월) 11:25 (제1차)	☐ 안전처리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6(월) 11:00 (제1차)	☐ 안전처리 ☐ 주요업무보고의 건	

Ⅲ. 의안처리

제10대 의회 의안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부의)	처 리 (가+나+다)	의 결				철회 (나)	보류 (다)	비고	
				계 (가)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66 (499)	66 (499)	59 (487)	50 (432)	9 (53)	0 (2)		2 (6)	5 (6)	
조 례 안	소 계	48 (298)	48 (298)	41 (289)	35 (251)	6 (45)	0 (2)		2 (6)	5 (3)	
	의 회 제 안	28 (160)	28 (160)	23 (153)	21 (131)	2 (22)			1 (4)	4 (3)	
	도지사 제 출	17 (89)	17 (89)	16 (89)	12 (79)	4 (10)			1 (0)		
	교육감 제 출	3 (49)	3 (49)	5 (47)	2 (40)	0 (5)	0 (2)		0 (2)	1 (0)	
규 칙 안		0 (5)	0 (5)	0 (5)	0 (5)						
예산 · 결산		4 (23)	4 (23)	4 (23)	2 (12)	2 (11)					
동의 · 승인		5 (44)	5 (44)	5 (41)	4 (33)	1 (8)				0 (3)	
건 의 안		0 (2)	0 (2)	0 (2)	0 (2)						
결 의 안		1 (23)	1 (23)	1 (23)	1 (23)						
기 타 안		8 (104)	8 (104)	8 (104)	8 (104)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74)	(34)	(8)	(2)	1 (17)	(3)	(4)	(4)		(2)
의회운영	(2)	(2)								
기획경제	(5)	(5)					(2)			
행정보건복지	(11)	(5)	(4)		(1)		(1)			
문화환경	(11)	(5)	(4)					(2)		
농수산	(3)	(2)					(1)			
건설소방	1 (32)	(11)		(2)	1 (16)			(2)		(1)
교육	(9)	(5)				(3)				(1)
특별위원회	(1)	(1)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2 (74)	2 (73)	(1)			
의회운영	(2)	(2)				
기획경제	3 (5)	3 (5)				
행 정 보건복지	(11)	(11)				
문화환경	2 (11)	2 (11)				
농 수 산	(3)	(3)				
건설소방	1 (32)	1 (31)	(1)			
교 육	1 (9)	1 (9)				
특별위원회	(1)	(1)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 9건(조례안 9)

2. 처리안건 : 10건

- 가결 의안 : 51건(조례안 10)
 - 제290회 임시회 조례 9건
 -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보류 조례 처리 1건

3. 의안접수 내용

- 9건 : 【조례안 9】

연 번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안 건 명	소 관 상임위원회	비 고
1	의회운영위원회 (2017. 2. 7)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 원 회	조례안
2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3	김봉교의원 의 7인 (2017. 1. 26)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4	도지사 (2017. 1. 26)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위 원 회	조례안
5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6	"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조례안
7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연 번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안 건 명	소 관 상임위원회	비 고
8	한해련의원 외 7인 (2017. 1. 26)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건설소방 위 원 회	조례안
9	교육감 (2017. 1. 2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조례안

4. 조례 공포 사항 : 10건

연번	이송일	이송처	안 건 명	공포일
1	2017. 2. 20	도지사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2017. 3. 2 제3887호
2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3. 2 제3888호
3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3. 2 제3889호
4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3. 2 제3890호
5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3. 2 제3891호
6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2017. 3. 2 제3892호
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3. 2 제3893호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3. 2 제3894호
9		교육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2. 27 제3885호
1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 2. 27 제3886호

5. 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

위원회	일 자	장 소	참석의원	활 동 내 용
건설 소방 위원회	1. 11(수)	대 구 일 원	위원장 외 9명	• 상임위 신년 간담회 -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전문지식 공유 - 상임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간 협력 도모
교육 위원회	1. 9(월)	도의회 (검무산)	위원장 외 8명	• 상임위 신년 산행 - 상임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상호간 협력 도모
독도 수호 특별 위원회	12. 23(금)	대구청사 회의실	위원장 외 5명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워크숍 - 독도관련 당면 현안사항 청취 - 일본 독도침탈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전략 방안 모색
정책 연구 위원회	1. 4(수)	도의회	위원장 외 6명	•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위촉식 -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6. 의원 동정

□ 수 상

수 상 자	수여기관	일 자	훈 격
홍진규 의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2017. 1. 12(목)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2017. 1. 24(화)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유공분야 (표창패)

VI. 5분 자유발언

□ 2017년 2월 6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남진복 의원(행정안전복지위원회) ◎

《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경상북도의 실효적 정책 시행촉구 관련 》

안녕하십니까?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이제 노골화를 넘어 이성을 잃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독도가 지역구이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의 이 같은 후안무치함을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경상북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상은 지난 1월 28일 신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일본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와 영토의식을 주입시켜 다음 세대까지 독도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책동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2월 22일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학습지도요령 검토,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발표 등 연중 수시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무엇보다 경상북도 울릉군 관할에 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성스러운 민족의 섬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때마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망언과 망동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일본은 과거 역사를 처절히 반성하고 진정한 자세로 사죄함과 아울러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3백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독도영유권 정책은 과연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적 수호의지를 다지고 도발을 규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영유권 강화사업이 매우 부진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중단한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방파제 건설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입도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방파제는

그보다 앞선 2012년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영유권 핵심 사업들이 이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중앙정부의 안이함과 함께 정치외교적인 고려를 지나치게 신중히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태도와 눈치 보기로 일관할 것인지 영토수호 의지가 있거나 한지 정부당국 또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독도 문제의 최대 현안인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건립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정부당국에 대응하고 경상북도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독도관련 업무를 지방에 위임 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어 야만 국가 간 외교 분쟁 확산을 적절히 차단하면서도 경상북도에 의한 보다 실효적 지배 강화대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현안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범도민 또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동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안입니다만 지난 연말, 연초에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

상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도는 대한
민국 영토수호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소녀상은 보편적 인권문제로서
한일 간의 정치·외교적 쟁점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함에도 경기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독
도의 가치와 위상과 현실을 간과한 것이고, 국제 분쟁화에 혈안이 된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17일
일본 외무상이 관련된 망언을 하며 논쟁을 부추긴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분별 있고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 2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종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 신규 교사 임용 배치 관련하여 》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90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보수의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참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12일 단행된 경북교육청의 교원인사에서 특정 지역의 교원 편중 배치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95명의 초등 신규 임용자 중 영주에 무려 37명, 울진에 18명, 청송에 11명이 발령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포항과 구미는 2명, 경주·김천·영천은 아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제272회 임시회 도정질문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선배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교육은 단순히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넘어 지역 사회 문화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유지와 지역발전의 근간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있는 교육청의 교원인사 행태는 자칫 지역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초등 신규교사 지역별 임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초등교사 대비 신규교사 임용 비율이 1.4%에서 15%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포항과 경주, 구미 등 대도시와 대구에 인접한 성주, 칠곡 등은 전체 교사대비 신규교사 임용비율이 1에서 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포항은 전체 초등교사 대비 최근 4년간 신규 임용자가 연평균 1.5%에 그치고 있으며 경주 2.3%, 구미는 2.4%, 경산 2.0%, 칠곡 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청송, 예천, 울진 등 농촌지역의 신규교사 임용비율은 15%가 넘습니다. 전체 초등교사가 65명에 불과한 청송은 최근 4년간 연평균 신규 임용자가 10명으로 무려 15%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시지역

에서도 영주와 상주가 각각 14%와 13%로 초등 신규교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렇게 편중 배치할 것이라면 신규 임용자에게 희망근무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지망에서 6지망까지 써내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 외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지난해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산간오지가 많은 우리 경북에서는 비선호지역에 초임교사를 대거 발령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약 60% 정도가 여성입니다. 초등교사의 여초현상이 해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그 비율은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교사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경력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시지역이거나 대구 인접지역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특정 산간오지 지역에 신규교사를 발령낼 수밖에 없다는 교육청의 궁색한 답변은 매우 근시안적인 인사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권 군 단위 지역이 왜 항상 초임교사의 실습장이 되어야 하며, 왜 항상 유배지로 전락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매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올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닌 말로 경북 북부권 지역이 경상북도의 강원남도 지역이라는
우스갯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경북도의 현실이자 현주소인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교육청 인사 관련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식 발상 때문에 지역 내
교육 불균형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균형을 외치면서
교육균형은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 여건, 환경만 부르짖고 진정한 교육균형은 교사의 고른
배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의 중요한
주체는 바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골고루 배치되지 않으면
교육균형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7년 2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황이주 의원(농수산위원회) ◎

《 국도 36호선과 88호선 4차로 조기 건설 촉구 관련 》

- 한울원전 비상대피로 확보 -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울진은 대한민국 최대의 원자력발전단지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10기가 가동 중에 있거나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에너지산업의 수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에너지산업 수도 울진의 원전 비상대피로 실상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먼저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는 원전사고를 다룬 ‘판도라’입니다.

(동영상 상영개시)

잘 보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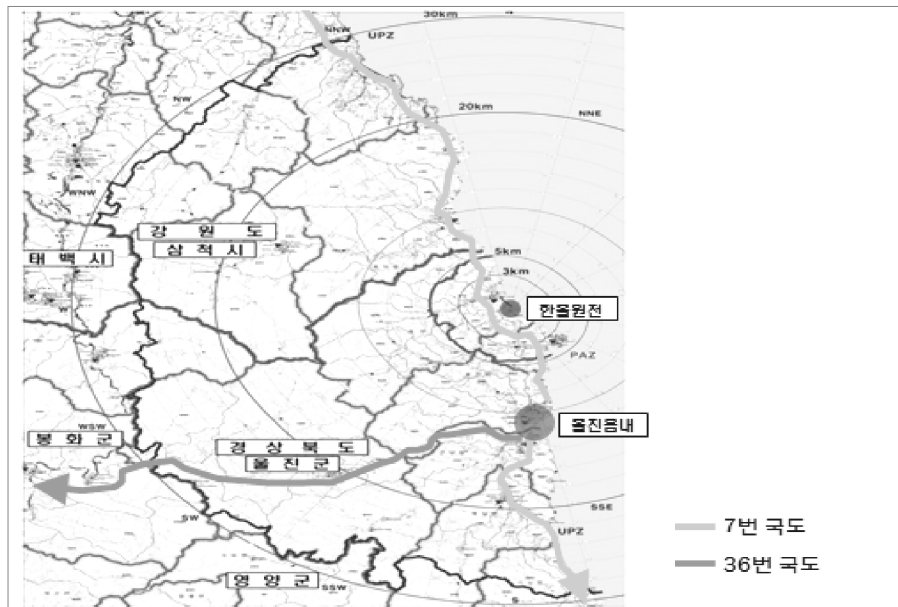
원자력발전소 폭발을 가상하였습니다. 지진으로 원자로가 폭발하고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냉각탑 누수로 인한 2차 폭발의 심각성을 다룬

영화입니다. 미흡한 초동대처가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한꺼번에 몰려나온 차량과 주민들로 인하여 왕복 6차로의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쯤 되니 주민들은 아예 차를 버리고 걸어서 허겁지겁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몰려오는 방사능을 피하기 위하여 어르신과 어린 아이,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넘어지고 깔리는 모습, 그야말로 이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비상계획구역 30km를 걸어서 대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입니다만 정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원자력 종사자분들께도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수도 울진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울진 북부지역에 위치한 한울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6만여 명의 주민들은 국도 7호선을 따라서 남쪽으로 대피해야만 합니다.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한꺼번에 차량이 몰릴 경우 국도 7호선은 대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건설된 국도 7호선은 몰려오는 방사능을 막아 줄 지형지물이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도 7호선을 이용한 남쪽 대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서쪽으로의 대피로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쪽 도로는 국도 36호선과 88호선이 유일하며 그것도 모두 2차로입니다. 36호선은 영주, 봉화 소천까지는 4차로로 되어 있는데 울진 구간만 2차로입니다.

현재 직선화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비상시 급박하게 이용하기에는 매우 좁고 위험한 도로입니다. 2차로로 평해에서 백암온천, 영양을 잇는 88호선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께 촉구합니다.

국도 36호선과 88호선을 선형개량과 함께 조기에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원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 신속하고 안전한 서쪽으로의 대피로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중앙부처에 요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도 36호선과 88호선을 이용하여 서쪽으로 대피할 경우 태백산맥이 방사능을 막아주는 자연적인 지형지물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하여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울진 ~ 분천 간 철도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철도건설계획 중단과 국도 36호선, 그리고 88호선의 확·포장 지연은 울진을 한 반도에서 가장 접근성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원전 대피로 확보를 위하여 국도 36호선과 88호선의 4차로 조기 확·포장과 철도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9건)	37
--------------------	----

二 조 례 안 二

1.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2017. 2. 7)
2. 경상북도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2017. 2. 7)
3.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봉교 의원 외 7인(2017. 1. 26)
4.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17. 1. 26)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17. 1. 26)
6.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도지사(2017. 1. 26)
7.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17. 1. 26)
8.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한혜련 의원 외 7인(2017. 1. 26)
9.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017. 1. 26)
10.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016. 10. 27)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 ③ 제14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주최자가 참석자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
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 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
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
서는 아니 된다.

-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 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 의원은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회수 상한은 월 3회로 한다.
- ⑧ 의원은 제7항의 따른 회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회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등) ①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를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9조제1항 본문 중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받는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 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 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고 별지 제8호의2 서식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하는 자에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호의2, 별지 제4호의2, 별지 제7호의2, 별지 제8호의2,
별지 제8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7.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 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 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신설 2017.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구분	도의원	비고
상한액	30만원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의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의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의원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원 여비 규정」등 소속기관에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 2.>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회피직무	☐ 의안심사 ☐ 예산심의 ☐ 행정감사·조사등 ☐ 기타			
	☐ 회의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설 2017. 2.>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직 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 시			
	장 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2.〉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2.〉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 명		정 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 2.>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 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 서식] <신설 2017. 2.>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소속위원회	
	직 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초과사례금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7. 2.>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경상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 2.>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 업 (소속)		연락처		
	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 시				
	장 소				
	내 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 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직 업 (소속)		연락처		
	주 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 표 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 시				
	장 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 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57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7. 2.>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 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 명		주 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 서식] <신설 2017. 2. >

금품 등 인도 확인서		
인도자	성 명	소속위원회
	정 당	연락처
신 고 접수번호		
품 목 (상 표)		
수 량		
가 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3 서식] <신설 2017. 2. >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 명	소속위원회
	정 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 량		
가 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7. 2.>

[illegible]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u>선물</u>”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u>향응</u>”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u>금품 등</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u>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u> 나. <u>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u> 다. <u>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u> 〈삭 제〉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시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기념품 등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현행	개정안
5. 이벤트 등에서 추천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직무와 관련된 국제행사에서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외국인이 제공하는 음식물 및 기념품 7.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지방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아니 된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 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4호

현 행	개 정 안
	<u>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 <u>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u> <u>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 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u> <u>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u> <u>⑦ 의원은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u>

현 행	개 정 안
〈신설〉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회수 상한은 월 3회로 한다. ⑧ 의원은 제7항의 따른 회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략)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 ---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금융회사 등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현행	개정안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③·④·⑤ (생략)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 ②·③·④·⑤ (생략)

현행	개정안
<u>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등)</u>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u>제20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u>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u>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u> <u>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u> <u>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u> <u>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u> <u>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고 별지 제8호의 2 서식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u> <u>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u> <u>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u>

현행	개정안
	<u>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u> <u>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8호의 3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u> <u>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u> <u>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u>세입·세출의 결산</u> 2. <u>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u> 3. <u>채권 및 채무의 결산</u> 4. <u>재산 및 기금의 결산</u> 5. <u>금고의 결산</u> 〈신설〉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u>1. 결산개요</u> <u>2. 세입·세출의 결산</u> <u>3. 재무제표</u> <u>4. 성과보고서</u> <u>5. 결산서의 첨부서류</u> <u>6. 금고의 결산</u> ② 〈삭 제〉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의장의 명에 의하여’를 ‘의장의 명에 따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경상북도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별표1 선박운임 중 ‘2등 정액’을 ‘1등급’으로, 숙박비(1일당) 중 ‘46,000’을 ‘70,000(특별시), 60,000(광역시), 50,000(그 밖의 지역)’으로 한다.

별표1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요율의 범위 안에서’를 ‘요율의 범위에서’로, ‘국토해양부장관의’를 ‘해양수산부장관의’로 한다.

별표1 제3호 중 ‘대구광역시내에서의’를 ‘안동시내에서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② (생략) ③ <신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생략) ②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 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 ----- -----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규정에 따른 ----- ----- ----- -----

현행

개정안

③ (생략)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및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1. 자동차운임(버스)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여비지급) ----- 본회의
----- 의장의
명에 따라 -----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경상북도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의원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20,000	70,000 (특별시) 60,000 (광역시) 50,000 (그 밖의 지역)	25,000

1. -----
국토교통부장관 -----

요율의 범위에서 -----

해양수산부장관의 -----

현행	개정안
2.(생략)	2.(현행과 같음)
3.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 (대구광역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편도 60km 이상 지역)나 도서 지역(수로편도 30km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3. ----- (안동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 ----- ----- ----- ----- ----- ----- ----- ----- -----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도청신도시본부(한시기구)”를 “도청신도시본부”로 한다.
조례 제357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하고, 도청신도시본부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까지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으로 하고, “법무통계담당관”을
“혁신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③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④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 “창조경제산업실장”을 각각 “경제부지사”,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민생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교통단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일자리투자본부장”, “농축산국장”, “보건복지국장”을 각각 “일자리민생본부장”, “농축산유통국장”,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투자유치본부장”을 “일자리민생본부장”으로 한다.

⑧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중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정보통신담당관”을 각각 “도청신도시본부장”,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자치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업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동해안발전본부(한시기구)·<u>도청신도시본부(한시기구)</u> 및 소방본부를 둔다. 부칙(조례 제3573호, 2014. 10. 27.)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 ————— ————— ————— ————— <u>도청신도시본부</u> ————— ——— 부칙(조례 제3573호, 2014. 10. 27.)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해안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u>하고, 도청신도시본부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 ————— ————— ————— ————— <u>한다.</u>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462명”을 “5,49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82명”을 “2,011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9 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9% 이내	32% 이내	34% 이내	8% 이상	1% 이내

비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7명(4급 1, 5급 1,
6급 1, 7급 4)은 제외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 관 별 직 급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 역 청
합 계		5,491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1,865	-				
	2 ~ 3급	2	1	1			
	3 급	11	10		1		
	3 ~ 4급	2	2				
	4급	83	61	7	5	9	1
	5급 이하	1,754	-				
	전문경력관	13	-				
별 정 직	소 계	15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1	-				
연 구 직	소 계	208	-				
	연구관	41			40	1	
	연구사	167	-				
지 도 직	소 계	27	-				
	지도관	10			10		
	지도사	17	-				
소 방 직	소 계	3,332	-				
	소방정	22	5		17		
	소방령 이하	3,310	-				
교 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명)		존 속 기 한	비 고
	계	내 역		
동해안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7. 8. 31	

현행					개정안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관별	정원(명)		존속 기한	비고	기관별	정원(명)		존속 기한	비고
	계	내역				계	내역		
합계	2	일반직 : 3급 2			< 삭제 >				
동해안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7. 8. 31		동해안발전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7. 8. 31	
도청신도시본부	1	일반직 : 3급 1	2017. 12. 31		< 삭제 >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수요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 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⑤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표창)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 기관 등으로 본다.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이에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11.11.]

[경상북도조례 제3491호, 2013.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낙동강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주변 지역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하천구역”이란 하천법 제2조 2항의 구역을 말한다.

②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50%이상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③ “친수구역 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

1. 하천구역 및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하천구역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3. 하천구역 및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시·군 상호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친수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제출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방재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13. 11. 11.〉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또는 지역개발 관련학과 대학교수

2. 지역개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그 밖의 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낙동강 연안개발 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실무기획단의 단장은 건설도시방재국장이 되고, 단원은 업무소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3. 11. 11.>

③ 실무기획단에 서기를 두며,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소관 과·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토의 및 진행사항
2.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3. 기타 중요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2.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천북초등학교물천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천북초등학교물천분교장	경주시 천북면 물천안길 31	〈삭제〉	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김 응 규
2017년 2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3의 경상북도포항학생수련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벽지 <나지역>의 경상북도포항학생수련원란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학생수련원의 명칭 및 위치 (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3] 학생수련원의 명칭 및 위치 (제36조제4항 관련)		
수련원명	위	수련원명	위	지
경상북도청도학생수련원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 - - - -	- - - - -	- - -
경상북도안동학생수련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 - - - -	- - - - -	- - -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 - - - -	- - - - -	- - -
경상북도울진학생수련원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 - - - -	- - - - -	- - -
<u>경상북도포항학생수련원</u>	<u>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u>	<삭 제>		